

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24일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-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2월 22일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오용수)

가. 개정 사유

-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, 각종 규제의 심사·정비 및 종합 조정등 광주광역시서구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, 공무원 및 민간인 참여 서구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

나. 주요 골자

○ 기 능

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-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
-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

○ 구 성

-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○ 회 의

-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○ 수 당 지 급

-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○ 부칙규정중

- (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3. 참 고 사 항

○ 제정근거 : 행정규제기본법제3조(적용범위)제3항

○ 표 준 안 :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('98. 9. 18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, 규제의 신설강화는 억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음
- 환경·보건·안전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봄
- 규제개혁 위원회 주요기능(제2조)의 내용은
 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사항(2조1호)은 자치단체 소관 모든 기존규제에관한 조례·규칙과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훈령·예규·고시에 규정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며,
 -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사항(2조2호)은 규제의 필요성,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고 신설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·규칙 등에 명시해야 할 것임
 -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사항(2조3호)는 모든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 서구새소식, 인터넷 Home page 등을 통해 주민에 공표해야 할 것임.
 -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사항(2조4호)은 신설·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,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 정비하여 처리하는 내용이며

-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(제7조)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,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데 주민의 참여가 지속이루어 지도록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.
-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3항)는 광주광역시서구 훈령제 176호의 규제대책 협의회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본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있음
-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규제의 신설은 억제하고,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12월 22일

제안자 : 김선옥 의원 외 5인

■ 수정이유

-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부칙 제3항(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에서 광주광역시서구규제 개혁대책협의회설치및운영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 것을 삭제함.

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③항을 삭제한다.

제③항(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부칙 제③(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도니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(삭 제)</p>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, 과, 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(관계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제7조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.

제8조(수당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관련규정 폐지) 광주광역시서구 훈령제176호 광주광역시서구 「규제개혁대책 협의회」 설치 및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③ (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.